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의안 번호	2222
----------	------

2021년 2월 25일  
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1년 2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2월 25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내 29개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입주

자(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매 3년마다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영차고지 사업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일반공개경쟁 시 기존 노선체계 파괴로 큰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입주자와의 수의 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함(안 제4조 및 제5조).
  - (현행) 시내버스 등 7개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천연가스공급시설), 교통안전공단
  - (개정) 충전시설사업자(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추가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용허가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기존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서울특별시와 협의·허가된 양도·양수 등 포함)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운영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한 경우
- 권역별 행정구역 중 동 명칭을 현행화함(안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입법예고('20. 11. 5.~11. 25.)결과: 의견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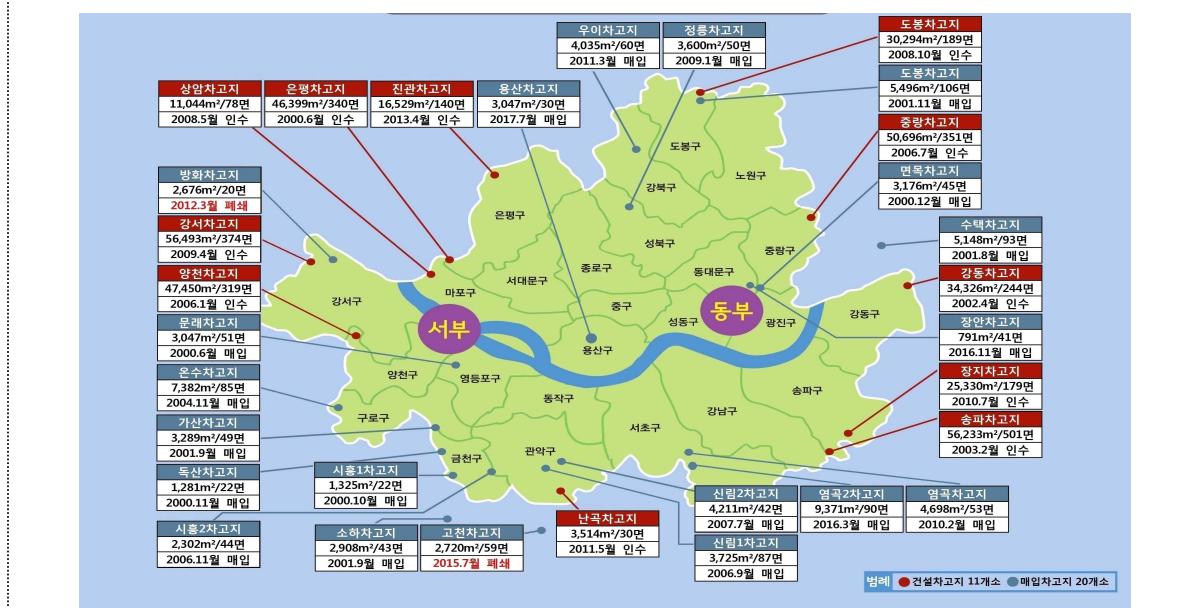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시설 중 천연가스 연료 공급시설로 한정된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및 전기공급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기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불가피하게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공영차고지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개소 : 31개소(건설11, 매입 18, 매입 후 타용도 2)
- 입주업체 : 138개 업체, 4,318대
  - 시내(3,490), 마을(520), 공항(194), 시티(14), 전세(15), 택시(85)
- 사용허가 기간 : '18. 7. 1.~'21. 6. 30.(3년)



## 나. 검토의견

###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추가 관련 (안 제4조 및 제5조)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시설 중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및 전기공급 시설까지 추가하는 한편 사용료 부과조항에 누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前 교통안전공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안 제4조 및 제5조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후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	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6. 한정면허 사업자  7.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설치업체	<u>1. ~ 6. &lt;좌 동&gt;</u>  <u>7.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 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u>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자 9. <u>교통안전공단</u> 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u>8. &lt;좌 동&gt;</u> <u>9.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u>
사용료 (제5조)	<u>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에</u>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부과·징수 1. <생 략> 2. <u>충전시설 설치 업체의 천연가스 공급시설</u> (하단 생략)	<u>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부과·징수.</u> 1. <현행과 같음> 2. <u>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 시설,, 전기공급시설</u> (하단 생략)

-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기오염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시내버스의 CNG버스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482대를 CNG 버스로 100% 교체한 바 있음<sup>1)</sup>

-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기질 악화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년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계획<sup>2)</sup>을 수립하여 2018년 29대를 시작으로 2020년 250대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까지 시내 및 마을버스를 대체차 수요에 맞추어 3,476대를 도입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2018년 “친환경 수소버스 시범도입 추진계획<sup>3)</sup>” 수립 후 '18년 수소버스 1대를 시내버스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 4월 “현대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MOU 체결”<sup>4)</sup>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수소버스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참고 :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3,476	29	106	250	804	422	380	617	868
전기시내버스	3,000	29	106	232	732	322	280	517	782
전기마을버스	476	-	-	18	72	100	100	100	86

1) 보도자료, 「서울시내버스, 올해 천연가스 버스로 100% 교체 완료」, 2014.4.7

2)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추진계획(버스정책과-14662, 2018.5.31.)

- 도입목표 : '25년까지 전기 시내버스 3,000대 도입
  - '18년도 30대를 시점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400대 이상 도입
  - 차량(11년)이 만료되는 일반버스를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로 전환

3) 친환경 수소버스 시범도입 추진계획(버스정책과-31050, 2018.11.15.)

- 정부·현대차 등 유관기관간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하여 추진
  - '18년 수소버스 1대(405번(염곡동~서울시청, 18대, 43.9km, 삼성여객), '19년 이후 수소버스 7대 시범도입

4) 보도자료, 서울시, 현대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MOU 체결(2020.4.1.)

- 노디젤 사회를 지향하는 미래 수소사회를 위한 서울시-현대차 협력
  -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 확대를 위한 협업
  - 수소체험관, 수소전기차 캠페인 등 시민 인식 개선 노력
  - 서울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할 것

- 과거 CNG 버스 도입에 따라 천연가스 충전시설 또한 함께 확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정 당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함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에 대해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을<sup>5)</sup> 감안할 때,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전기 공급시설과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는 “충전시설”에 포함하는 동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는 포함된 한국교통안전공단 (前 교통안전공단)이 사용료 부과조항에 누락되어 이를 명시하고, [별표]의 권역별 행정구역에 나타있는 동 명칭을 현행화 한 것은 조례 해석 시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용허가 대상 규정 관련(안 제4조의2 신설)

- 안 제4조의2는 버스노선체계 이행 등을 위해 기존 사용허가를 받은 공영 차고지 사업자가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버스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2000.5.20. 제정)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1) 수의의 방법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가능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 \* 참고 : 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수의허가 근거

구분	내용	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 · 수익허가)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u>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u></p> <p>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p>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u>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u></p> <p>1.~23. (생략)</p> <p>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u></p>	조례에 구체적 내용 및 범위 없음 (동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서울시 공영차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sup>6)</sup>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나, 현재

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동 조례에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는 불가한 실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sup>7)</sup>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2) 그간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수의계약 및 갱신 근거

- 서울시는 공영차고지가 운영<sup>8)</sup>된 2000년부터 현행 조례 제4조를 근거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서울시와 사용허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하였으나,

2015년 1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sup>9)</sup>시 천재지변 및 서울시 귀책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연장 근거가 삭제된 상황임

3. 기업용재산 (하단 생략)

4. 보존용재산 (하단 생략)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 · 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 · 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최초 건설차고지 : 은평(2000. 6) 등

9)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시장 - 의안번호 : 09-00135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일자 : 2014. 10. 30 - 공포일자 : 2015. 1. 2

- 주요내용

1.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변경

2.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조례 개정 후 서울시가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연장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부적절한 조치이고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지난 '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음<sup>10)</sup>

### \* 참고 : 동 조례의 개정 연혁(사용허가 연장/갱신 관련)

구 분	조례 개정일('15. 1. 2)	
	개정전	개정후
서울시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 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 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 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법 개정일('10. 8.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p>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p> <p>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 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 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 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 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lt;개정 2010. 2. 4.&gt;</p> <p>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p>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2020년 11월 6일)

○ 송도호 위원 아니요, (중략) 그러면 그 업체가 못 들어온다면 그다음 업체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오늘 이후부터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지금 이 조항과 또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라면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나면 일단 무조건 계약은 종료를 해야 되고 (하단 생략)

○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되면 되지요, 5년 끝나고 나면. 그거 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을버스나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데가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연장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 또한, 서울시가 동 조례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공영 차고지 사용허가를 3년 단위로 연장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2006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된 이후 부터는 수의계약 대상<sup>11)</sup>에 포함되지 않는 공영차고지를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해 온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참고 : 사용허가 갱신 및 연장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법 / 조례)

구 분	제·개정일	
	2006. 1. 1 (제정)	2010. 8.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b>갱신</b>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b>연장</b>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b>갱신</b> 3.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공 영차고지설치 및운영관리에 관한조례	<b>2000. 5. 20(제정)</b>  <b>연장 또는 단축</b>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b>2015. 1. 2</b>  <b>단축</b>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b>연장</b>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1. 1.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법 제24조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3)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쟁점

- 서울시 공영차고지는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버스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주차공간 및 버스운영관련 부지를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현재 29개소의 공영차고지<sup>12)</sup>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33개 업체 4,318대가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음 [별첨 참조]
- 동 개정조례안은 버스노선체계 이행 및 버스운영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버스운행을 위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조례에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버스노선운영의 혼선을 방지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동안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연장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 입법자문<sup>13)</sup>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제4조제3항<sup>14)</sup>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sup>15)</sup> 등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12) 서울시 자료 : 총 31개소 (건설11, 매입 18, 매입 후 타용도 2)

13) 법무법인 제이엔씨, 공영차고지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없이 기존 업주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020.5

14)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5)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규정한 것은 현행 조례가 공영차고지의 복수 운송사업자 입찰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 사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 허가 갱신이 공유재산의 활용 목적에 바람직한지 여부와 더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수의계약이 계속될 경우 또 다시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용 차고지의 공공성과 함께 특정 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유화 논란이 반복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공영차고지를 대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검토요청<sup>16)</sup>을 통해 2015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추진한 것은 안일한 행정조치로 비춰지는 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1.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3.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사업자

16) 서울시설공단 주차기설운영 치-3226(2018.3.14.),

- 수신 : 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장)
- 제목 : 공영차고지 신규 사용허가 관련 사항 검토요청
-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전체를 재산정될 경우 노선 운행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별첨]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현황

### ○ 서울시 공영차고지 : 29개소<sup>17)</sup>

연번	구별	명칭	위치	면적( $m^2$ )	사용허가
합 계				447,961	138
1	강동	강동	강일동 565-4	34,326	7
2	강서	강서	개화동 663	56,493	13
3	관악	난곡	신림동 678-2	3,514	6
4	도봉	도봉	도봉동 341-1	30,294	6
5	마포	상암	상암동 1666	11,044	2
6	송파	송파	장지동 579	56,233	14
7	송파	장지	장지동 862	25,330	5
8	양천	양천	신정동 1312	47,450	17
9	은평	은평	수색동 414-1	46,399	17
10	은평	진관	진관동 36	16,529	5
11	중랑	중랑	신내동 63	50,696	10
12	금천	가산	가산동 29-6	3,289	1
13	도봉	도봉	도봉동 282-30	5,496	2
14	금천	독산	독산동 1001	1,281	1
15	중랑	면목	면목동 391-1	3,176	1
16	영등포	문래	문래동 5가 8-1	3,047	1
17	금천	시흥1	시흥동 980-1	1,325	2
18	금천	시흥2	시흥동 262-4	2,302	1
19	관악	신림2	신림동 241-4	3,725	1
20	관악	신림3	신림동 131-6	4,211	2
21	서초	염곡1	염곡동 300	4,698	2
22	서초	염곡2	염곡동 300-2	9,371	3
23	구로	온수	온수동 58	7,382	6
24	강북	우이	우이동 6-1	4,035	1
25	동대문	장안	장안동 319-1	792	1
26	성북	정릉	정릉동 771-7	3,600	2
27	용산	용산	한강로3가 40-1051	3,791	4
28	광명	소하	소하동 1054-6	2,908	3
29	구리	수택	수택동 884	5,224	2

17) 총 31개소 (건설11, 매입 18, 매입 후 타용도 2)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매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을 “설치·매입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보”를 “서울시보”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충전시설사업자”라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조제3항 본문 중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를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이 조례에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공영차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협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를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전시설 설치 업체의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역별 행정구역

1. 도 심 : 중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
2. 1권역(강동) : 강동구 전역, 송파구(풍납1·2동), 성동구(마장동,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사근동, 용답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
3. 2권역(송파) : 송파구 전역(풍납1·2동 제외), 성동구(용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옥수동), 광진구(자양1·2·3·4동)
4. 3권역(서초) : 서초구·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
5. 4권역(관악) : 동작구·관악구 전역, 용산구(청파동,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한강로동,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
6. 5권역(구로)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전역
7. 6권역(양천) : 강서구·양천구 전역
8. 7권역(은평)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전역
9. 8권역(도봉) : 도봉구·강북구 전역, 성북구(성북동, 동소문동, 돈암2동, 동선동, 정릉1·2·3·4동, 길음1·2동),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
10. 9권역(노원) : 노원구 전역, 성북구(삼선동,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석관1·2동, 종암1·2동, 월곡1·2동)
11. 10권역(중랑) : 동대문구·중랑구 전역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매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u>	1. ----- ----- ----- ----- ----- ----- ----- ----- ----- ----- ----- ----- ----- ----- ----- ----- <u>설치·매입하는</u>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생 략)  <u>② 제1항에 따라 설치·매입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관할 행정구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u>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 ----- ----- 서울시보 -----.</u>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p> <p><u>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u></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p> <p><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li> <li>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li> <li>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li> <li>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li> <li>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li> </ol>

현 행	개 정 안
<p><u>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p>
	<p>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8.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충전시설사업자”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p>	<p>9.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이 조례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공영차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p>

현 행	개 정 안
<p><u>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u>④ (생 략)</u></p>	<p>-----</p> <p>-----.</p> <p><u>④ (현행과 같음)</u></p>
<p><u>&lt;신 설&gt;</u></p>	<p><u>제4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u></p> <p><u>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 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협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u></p> <p><u>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u>	<u>제5조(사용료) ① -----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u> <u>-----.</u>
<u>1. (생 략)</u>	<u>1. (현행과 같음)</u>
<u>2. 충전시설 설치 업체의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u>	<u>2.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 한국교통안전공단-----</u> <u>-----.</u>
<u>② ~ ④ (생 략)</u>	<u>② ~ ④ (현행과 같음)</u>
<b>【별표】 권역별 행정구역</b>	<b>【별표】 권역별 행정구역</b>
<b>【별표1】 권역별 행정구역</b> <p>1. 도 심 : 종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      2. 1권역(강동) : 강동구 전역, 송파구(풀납1·2동), 성동구(마장동, <u>왕십리1·2동</u>, 행당1·2동, 사근동, <u>도선동</u>, 용답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p>	<p>1. 도 심 : 종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      2. 1권역(강동) : 강동구 전역, 송파구(풀납1·2동), 성동구(마장동, <u>왕십리도선동</u>, <u>왕십리2동</u>, 행당1·2동, 사근동, 용답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p>

현 행	개 정 안
<p>3. 2권역(송파) : 송파구 전역(풍남1·2동 제외), 성동구(옹봉동, <u>금호1·2·3·4동</u>,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u>옥수1·2동</u>), 광진구(<u>자양1·2·3동</u>, <u>노유1·2동</u>)</p> <p>4. 3권역(서초) : 서초구 · 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u>한남1동</u>, <u>한남2동</u>,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p> <p>5. 4권역(관악) : 동작구 · 관악구 전역, 용산구(<u>청파1·2동</u>,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u>한강로1·2·3동</u>,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p> <p>6. 5권역(구로) : 영등포구 · 구로구 · 금천구 전역</p> <p>7. 6권역(양천) : 강서구 · 양천구 전역</p> <p>8. 7권역(은평) :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전역</p> <p>9. 8권역(도봉) : 도봉구 · 강북구 전역, 성북구(<u>성북1·2동</u>, 동소문동, 돈암2동, <u>동선2동</u>, <u>정릉1·2·3·4동</u>, <u>길음1·2·3동</u>),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p> <p>10. 9권역(노원) : 노원구 전역, 성북구(<u>삼선1·2동</u>,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u>상월곡동</u>, <u>동선1동</u>, 석관1·2동, 종암1·2동, <u>월곡1·2·3·4동</u>)</p> <p>11. 10권역(중랑) : 동대문구 · 중랑구 전역</p>	<p>3. 2권역(송파) : 송파구 전역(풍남1·2동 제외), 성동구(옹봉동, <u>금호1가동</u>, <u>금호2·3가동</u>,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u>옥수동</u>), 광진구(<u>자양1·2·3·4동</u>)</p> <p>4. 3권역(서초) : 서초구 · 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u>한남동</u>,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p> <p>5. 4권역(관악) : 동작구 · 관악구 전역, 용산구(<u>청파동</u>,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u>한강로동</u>,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p> <p>6. 5권역(구로) : 영등포구 · 구로구 · 금천구 전역</p> <p>7. 6권역(양천) : 강서구 · 양천구 전역</p> <p>8. 7권역(은평) :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전역</p> <p>9. 8권역(도봉) : 도봉구 · 강북구 전역, 성북구(<u>성북동</u>, 동소문동, 돈암2동, <u>동선동</u>, <u>정릉1·2·3·4동</u>, <u>길음1·2동</u>),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p> <p>10. 9권역(노원) : 노원구 전역, 성북구(<u>삼선동</u>,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석관1·2동, 종암1·2동, <u>월곡1·2동</u>)</p> <p>11. 10권역(중랑) : 동대문구 · 중랑구 전역</p>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개정 및 제4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신설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조양호 (02-2133-2372)